

#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(안)

(전문공급자 승인 지침)

-외부의견조화-

2020. 9.



선 체 규 칙 개 발 팀

## - 주 요 개 정 내 용 -

(1) 2021.01.01. 일자 시행사항

- 선금기술규칙 제/개정 요청서 반영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1. 서문 &lt;생략&gt; 2.</p> <p>3. 부록 A편 IACS UR Z17에 등재된 전문공급자의 승인 &lt;생략&gt; 4.</p> <p>5. 부록 B편 IACS UR W35에 등재된 전문공급자의 승인 (2020) 6.</p> <p>1. 선박 및 해양 구조물/구성품에 비파괴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선소 내부부서 또는 독립적인 회사(UR W35) 1.1 ~ 1.7 &lt;생략&gt; 1.8 품질시스템 공급자는 적어도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 (1)~(18) &lt;생략&gt;</p> <p>위 내용을 포함하고 ISO/IEC 17020:2012의 최신 버전을 만족하는 문서화된 품질 시스템은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. 전문공급자는 ISO/IEC 17020:2012에 설명된 대로, 유형 A 또는 유형 B 검사 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.</p> <p>1.9 ~ 1.13 &lt;생략&gt;</p> <p>7. 부록 C편 IACS UR Z17에 등재되지 않은 전문공급자의 승인 &lt;생략&gt;</p>	<p>8. 9. 서문 &lt;현행과 동일&gt; 10.</p> <p>11. 부록 A편 IACS UR Z17에 등재된 전문공급자의 승인 &lt;현행과 동일&gt; 12.</p> <p>13. 부록 B편 IACS UR W35에 등재된 전문공급자의 승인 (2020) 14.</p> <p>1. 선박 및 해양 구조물/구성품에 비파괴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선소 내부부서 또는 독립적인 회사(UR W35) 1.1 ~ 1.7 &lt;현행과 동일&gt; 1.8 품질시스템 공급자는 적어도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 (1)~(18)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위 내용을 포함하고 ISO/IEC 17020:2012의 최신 버전을 만족하는 문서화된 품질 시스템은 수용할 수 있다. 전문공급자는 ISO/IEC 17020:2012에 설명된 대로, 유형 A 또는 유형 B 검사 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.</p> <p>1.9 ~ 1.13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15. 부록 C편 IACS UR Z17에 등재되지 않은 전문공급자의 승인 &lt;현행과 동일&gt;</p>	<p>선급기술규칙 제/개정요청서 반영</p>

(1) 2021.07.01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
● IACS Z17(Rev. 15 Oct 2020) 개정사항 반영

- 전문공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도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함.
- 케이블 관통부 밀봉 시스템 검사에 종사하는 전문공급자 승인요건 신설

(1) 2021.07.01일자 시행사항  
(검사신청일 기준)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문</b></p> <p>1. ~ 3. &lt;생략&gt;</p> <p>4. 적용</p> <p>(1) 이 절차는 다음 분류의 전문공급자의 승인에 적용한다.</p> <p>(가) 정부대행 분야 서비스 &lt;생략&gt;</p> <p>(나) 선급 및(또는) 정부대행 분야 서비스</p> <p>(a) 다음을 제외한 선박 또는 이동식 해양구조물에 대한 두께계측에 종사하는 회사</p> <p>(i) 총톤수 500톤 미만의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 및</p> <p>(ii) 모든 어선</p> <p>(b) ~ (h) &lt;생략&gt;</p> <p><u>&lt;새롭게 추가&gt;</u></p> <p>(i) ~ (k) &lt;생략&gt;</p> <p>&lt;이하 생략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문</b></p> <p>1. ~ 3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4. 적용</p> <p>(1) 이 절차는 다음 분류의 전문공급자의 승인에 적용한다.</p> <p>(가) 정부대행 분야 서비스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(나) 선급 및(또는) 정부대행 분야 서비스</p> <p>(a) 다음을 제외한 선박 또는 이동식 해양구조물에 대한 두께계측에 종사하는 회사</p> <p>(i) 총톤수 500톤 미만의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 및</p> <p>(ii) 모든 어선</p> <p>(b) ~ (h)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<u>(i) 선박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에 대한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검사에 종사하는 회사 (2021)</u></p> <p><u>(j) (i) ~ (l) (k) &lt;현행과 동일&gt;</u></p> <p>&lt;이하 현행과 동일&gt;</p>	<p>케이블 관통부 밀봉 시스템 검사에 종사하는 회사 전문공급자 승인 요건 신설</p> <p>- reflected to 4.1.2 of IACS UR Z17 (Rev.15 Oct 2020)</p> <p>- 번호 조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<b>5. 승인 및 인증절차</b></p> <p>(1) 자료의 제출 &lt;생략&gt;</p> <p>(2) 일반요건</p> <p>(가) ~ (아) &lt;생략&gt;</p> <p>(자) 하청업자</p> <p>전문공급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하청을 준 경우 협정서 및 업무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이러한 하청업자의 후속관리에는 전문공급자에 의한 품질경영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. <u>장비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하는 하청업자는 (2)호 및 (5)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&lt;생략&gt;</p> <p>(5) 품질시스템</p> <p>(가) ~ (나) &lt;생략&gt;</p> <p>(다) 장비제조자(및/또는 동 제조사의 전문공급자)가 그 지정 대리점 및/또는 자회사를 포함하여 우리 선급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장비제조자는 최신의 ISO 9000 시리즈에 따라 승인된 품질시스템을 시행하여야 한다. 품질시스템은 제조자(및/또는 동 제조사의 전문공급자)의 대리점 및/또는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포함하여야 한다. 지정 대리점/자회사도 최신의 ISO 9000 시리즈에 적합하고 동등하게 효과적인 품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 이러한 승인은 최신의 ISO 9000 시리즈에 따라 모회사에 의하여 시행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. 우리 선급은 이 품질시스템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리점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최신의 ISO 9000 시리즈에 따르는 후속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&lt;이하 생략&gt;</p>	<p><b>5. 승인 및 인증절차</b></p> <p>(1) 자료의 제출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(2) 일반요건</p> <p>(가) ~ (아)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(자) 하청업자</p> <p>전문공급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하청을 준 경우 협정서 및 업무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이러한 하청업자의 후속관리에는 전문공급자에 의한 품질경영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. <u>승인된 전문공급자에게 서비스를 장비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하는 하청업자는 (2)호 및 (5)호 5절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 (2021)</u></p> <p>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(5) 품질시스템</p> <p>(가) ~ (나)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(다) 장비제조자(및/또는 동 제조사의 전문공급자)가 그 지정 대리점 및/또는 자회사(하청업자 제외)를 포함하여 우리 선급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장비제조자는 최신의 ISO 9000 시리즈에 따라 승인된 품질시스템을 시행하여야 한다. 품질시스템은 제조자(및/또는 동 제조사의 전문공급자)의 대리점 및/또는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포함하여야 한다. 지정 대리점/자회사도 최신의 ISO 9000 시리즈에 적합하고 동등하게 효과적인 품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 이러한 승인은 최신의 ISO 9000 시리즈에 따라 모회사에 의하여 시행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. 우리 선급은 이 품질시스템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리점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최신의 ISO 9000 시리즈에 따르는 후속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. (2021)</p> <p>&lt;이하 현행과 동일&gt;</p>	<p>- reflected to 5.2.9 of IACS UR Z17 (Rev.15 Oct 2020) : 전문공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도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함.</p> <p>- reflected to 5.5.3 of IACS UR Z17 (Rev.15 Oct 2020)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〈새롭게 추가〉</p>	<p><b>15. 선박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에 대한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검사에 종사하는 회사 (2021)</b></p> <p><b>15.1 업무범위</b></p> <p>(1)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관련 승인증서 및 제품 설치 매뉴얼 (해당되는 경우 관통 케이블의 형식, 치수, 충전 비율, 절연 세부사항 및 수밀에 대한 자체검증 방안) 준수 여부 점검</p> <p><b>15.2 승인 범위</b></p> <p>(1) 이 절차는 제조자 또는 조선소가 전문공급자로 종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</p> <p>(2)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검사에 종사하는 전문공급자는 검사를 제공하는 각 제조자 및 형식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, 제조자로부터 승인되었거나 제조자의 확립된 교육 시스템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. 이러한 자격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되는 경우, 인정된 국가, 국제 또는 산업 표준 또는 장비 제조자가 확립한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작업자의 고용 및 문서화. 어떠한 경우에도, 자격 인증 프로그램은 서비스가 제공 되어지는 각 장비의 제조자 및 형식에 대하여 15.3항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. 그리고</li> <li>- 15.4, 15.5, 15.6항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.</li> </ul> <p>(3) 제조자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더 이상 기술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, 전문공급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이전 승인 및 또는 전문공급자로서 장기간의 경험과 확인된 전문성을 근거로 해당 장비에 대하여 승인 될 수 있다.</p> <p><b>15.3 작업자의 자격 및 훈련</b></p> <p>(1) 15.1. (1)항에 명시된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해당 장비의 각 제조자 및 형식마다 승인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2) 작업자의 초기 인증에 대한 교육은 최소한 다음과 같이 문서화 및 다루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의 점검 절차 및 지침</li> <li>-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의 초기 설치 및 사용 중 점검시 공통적인 문제 발견</li> <li>- 국제협약 등 관련 규칙 및 규정</li> <li>-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기록부에 있는 케이블 관통부 시스템의 초기 설치 및 사용 중 점검에 대한 보고절차</li> </ul>	<p>- reflected to 17 of IACS UR Z17 (Rev. 15 Oct 2020)</p> <p>- 수밀에 대한 자체 검증 방안 추가</p> <p>국제업무팀 comment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〈새롭게 추가〉</p>	<p>(3) 해당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는 해당 작업자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을 이용한 실제 검사에 대한 실제적인 기술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. 기술 훈련에는 장비의 분해, 재조립 및 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. <u>강의실 교육은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인증자의 감독 하에 인증이 필요한 검사에 대한 현장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.</u></p> <p>(4) 최초 인증 시와 갱신 시마다 전문공급자는 작업자가 인증된 장비를 사용하여 역량 평가를 만족스럽게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<u>문서를 제공해야 한다.</u></p> <p>(5) 전문공급자는 인증을 갱신하기 위해 적절한 재교육이 필요하다.</p> <p><u>15.4 참고문서</u>  전문공급자는 다음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  - 제조업체의 서비스 매뉴얼, 서비스 계시판, 지침 및 교육 매뉴얼(해당 시)  -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의 설치 또는 정비 중에 적절한 조건을 나타내는 형식승인증서.</p> <p><u>15.5 장비 및 시설</u>  전문공급자는 다음 사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  - 충분한 도구, 특히 선박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 공구를 포함하여 장비 제조업체의 지침에 명시된 모든 특수 공구</p> <p><u>15.6 보고</u>  점검이 완료되면 전문공급자는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행한다. <u>그들은 또한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기록부에 검사 결과를 기록한다.</u></p>	<p>- reflected to 17.4 of IACS UR Z17 (Rev. 15 2020)</p> <p>- reflected to 17.5 of IACS UR Z17 (Rev. 15 2020)</p> <p>- reflected to 17.6 of IACS UR Z17 (Rev. 15 2020)</p>